

예술인 고용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.

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요율 인하

- '21. 7. 1.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요율 인하 1.6% ⇨ 1.4%

구분		종전('21.6월 이전)	변경('21.7월 이후)
실업급여 요율	합계	1.6%	1.4%
	사업주 부담분	0.8%	0.7%
	예술인 부담분	0.8%	0.7%

- '21. 7월 이전 취득자의 상실일이 '21. 7월 이후인 경우 보수총액 구분신고 필요

(예시)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"취득일 2021.2.1.", "상실일이 2021.9.1."인 경우

기간	보수 총액	사업주 부담분(①)	예술인 부담분(②)	보험료 합계(①+②)
2021. 2. 1.~ 6. 30.	5백 만원	5백만원*0.8%= 40,000원	5백만원*0.8%= 40,000원	80,000원
2021. 7. 1.~ 8. 31.	2백 만원	2백만원*0.7%= 14,000원	2백만원*0.7%= 14,000원	28,000원

※ 보수총액 구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실신고 시 기재된 보수총액을 피보험기간에 따라 나누어 정산

- 2021년에 계속 종사하는 예술인의 경우는 2021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 1~6월 보수와 7~12월 보수를 구분하여 신고

보수총액 구분 신고하는 방법

- ▶ 전자 신고할 경우(토달서비스 <https://total.kcomwel.or.kr>)
민원접수/신고⇒보수신고⇒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
- ▶ 서면 신고할 경우 첨부된 "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" 서식 활용

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상한액 신설

- '21. 7. 1.부터 개인별 보험료(사업주 부담금 + 예술인 부담금) 상한액
월 441,150원, 연간 5,293,800원으로 적용

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☎1588-0075) 또는
예술인가입부(☎02-2097-9250)로 문의하세요.

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추가 안내

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

- 공무원, 사학연금 등 적용자, 별정우체국 직원이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
- 적용제외 대상(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 - ①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 - ②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- ③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
- 적용제외 대상이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소 및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 필요

피보험자격 취소 신청 방법

- ▶ 전자 신청할 경우(고용산재토탈서비스 <https://total.kcomwel.or.kr>)
 - ① 일반예술인은 민원접수/신고 ⇒ 자격관리 ⇒ 피보험자·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
 - ② 단기예술인은 민원접수/신고 ⇒ 자격관리 ⇒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
- ▶ 서면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“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서” 및 “일용 근로내용 정정취소 신청서” 서식 활용

※ 피보험자격 취소 후 과납보험료는 별도의 반환 신청이 없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험료에 충당됨

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

- 지원대상 :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
 - 지원율 : 80%(근로자 10명 미만 사업, 예술인 수 제한없음)
 - 지원기간 : 예술인별 36개월(근로자 지원기간과 별도)
 - 지원제외 :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, 전년도 종합소득 연 3,800만원 이상
 - 합산관련 :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를 합산하여 22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
- ※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- 지원신청 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 「서식자료」에서 양식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팩스 0502-223-3203으로 제출

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☎1588-0075) 또는 예술인가입부(☎02-2097-9250)로 문의하세요.

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관련 문의

- 국번 없이 ☎1350 (고용노동부 콜센터)